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204071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20407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42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경희, 원지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명

담당변호사 최동곤

변론종결 2022. 6. 22.

판결선고 2022. 8.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42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6. 8. 11. 접수 제2485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한 주장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K이 원고의 위임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K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2억 3,000만 원을 이후 피고로부터 돌려받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공급약정상 스마트법회폰 사용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급약정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거나, 피고의 스마트법회폰 공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이를 해제하여, 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총무원장으로 있는 D의 재무 담당 이사 K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관련 소송 취하와 기부금 반환,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 등 원고, 피고, H 간 분쟁의 일괄적인 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제1심 판결 2. 나. 3)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한편 K이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8. 6. 말경 피고의 재무 담당 이사 W을 찾아가 2억 3,000만 원 수표를 교부한 사실, K은 당시 W에게 ‘이 돈은 K이 원고에게 빌려주는 것이며, 원고가 K에게 위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해 주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으로 갈음하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며칠 후 K이 W을 다시 찾아가 ‘원고가 차용증 작성이나 공증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W으로부터 위 수표를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이 추단될 뿐, 원고와 피고가 그들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공급약정상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채권인데 그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공도일, 판사 오영상, 판사 최항석

별지